



공민공공공공

공민공공공공

공민공공공공

百

미 완 결	전 명 부	완 결
	기 관 배	호 종 결

第 八 號

지행상부의

안	수 접
단기 1992년 3월 20일	단기 년 월 일
재	결
1992. 4. 10	1992. 4. 10
해	지
1992. 4. 11	1992. 4. 11
합 계	일 반 증 분 부
합 계	성 정
호 번	계 관

시장장

부지



국장

국장

내무

장



도시계획과장

도시계획과장

도시계획과장

도시계획과장



도시계획과장

도시계획과장

기안자

건명건축사 지정 고시에 관해

시에 용대문구 전농동 구서로 201-1

용대문구 용두동 17-1-1 지내에 건축사 지정

고지 별지와 같이 신청이 있어 도시계획과장

연결하는 배수용의 별부지방이용기  
 사가지계형  
 제17조 단서이 의의 지점과 동시 동시행  
 자치제 416조의 의의 과안과 같이 국시  
 고지 연결은 양항수의 의

성공의 열쇠 286 호

시가지 계획령 제 1호 조와 동령 시행규칙 제 14호 조와 규령의 의의에 관하여 좌의대 김기우

의정한다.

대기청년회 4월 19일

성공의 열쇠 286 호

기

지정 장소

간격

연장

적용

은

동대포구 유물유적 보호구역

3m

30m

유기 관계 도면은 진실로 동시적이며 이  
이치라는  
일반의적  
공관





수제전

위 ~~수제전~~ 별리위 광이 | 공시 ~~위~~ ~~수제전~~ | 본전 시행

이 만 권을 기록시 말

(별리 안 = 권은 권은) |

(안 2)

년 원 인

전 신 주 장

내 우 주 장 앞

전 영

주 제 가 전 별리위 광이 | 공시 위 ~~수제전~~ | 시보에



